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수욕장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계고·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143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라, 야영용품 및 취사용품 등을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으로 정하고,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관·공고·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10. ~ 4. 20., . . ~ . .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제거 대상 물건)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“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(이하 “물건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야영용품
2. 취사용품
3.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

제10조의2(물건의 보관 및 처리)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이 있던 곳에 물건의 제거 사실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건의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,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

을 기록해야 한다.

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을 제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.

1. 물건의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
2. 물건의 보관 장소
3. 물건의 제거·운반·보관·공고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을 찾아가는 것

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해야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.

1.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.

⑦ 관리청은 물건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에 소요된 비용(제거·운반·보관·광고·매각·폐기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우선 충당해야 하고,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의 보관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의3(물건의 반환)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을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

부터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
관리청이 해수욕장에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(제거 대상 물건)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“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(이하 “물건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u> <u>1. 야영용품</u> <u>2. 취사용품</u> <u>3.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</u>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물건의 보관 및 처리)</u> <u>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의 있던 곳에 물건의 제거 사실 및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.</u> <u>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, 해양수산부령으로</u>

정하는 바에 따라 물건의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,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.

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을 제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.

1. 물건의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
2. 물건의 보관 장소
3. 물건의 제거·운반·보관·공고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을 찾아갈 것

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

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해야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.

1.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

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

<신 설>

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.

⑦ 관리청은 물건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에 소요된 비용(제거·운반·보관·공고·매각·폐기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우선 충당해야 하고,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의 보관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의3(물건의 반환)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을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

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
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
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
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
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
우 물건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
그 물건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
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53